

우리의 권리, 알아야 지킨다

학생인권수첩



학생 인권 수첩

《학생인권수첩》 속 이야기는 일부 학교나 개인이 경험한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름이나 명칭 역시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모든 학교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는 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4조 제5항

왜 ‘인권’을 알아야 할까요?

먼저, ‘인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인권’은 ‘너’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면
 ‘너’의 권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나’의 권리는 곧 ‘너’의 권리입니다.
 셋째, ‘인권’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와 ‘너’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인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와 ‘너’, 그렇게 ‘우리’가
 인권과 더불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는 글 - 4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모든 길은 성적으로 통한다? - 10
- “남자가……, 여자가……” 이런 말 싫어요 - 12
- 임신·출산이 징계 사유인가요? - 14
-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말아요 - 16
- 정상 가정, 비정상 가족이 따로 있나요? - 18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사랑의 별? - 22
- 훈계인지 화풀이인지 헷갈려요 - 24
- 사이버폭력이 무서워요 - 26
- 친근해서 그런 거라고요? - 28
- 학교에서 다쳐도 치료비 걱정 없어요 - 30



교육에 관한 권리

- 치마 짧으면 수업도 못 듣나요? - 34
- ‘자율’ 없는 자율 학습 - 36
-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 38
-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영어라니요! - 40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 원색 외투도 입고 싶어요 - 44
- 내 머리는 자연 머리에요 - 46
- 막무가내 소지품 검사는 싫어요 - 48
- 연애하면 무조건 풍기 문란? - 50
- 휴대폰 사용, 생활 협약으로 해결해요 - 52
- 개인 정보, 지켜 주세요 - 54
- 내 이름은 동네북이 아닙니다 - 56
- 내 정보를 내가 못 고친다고요? - 58



5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강요에 의한 반성문은 싫어요 - 62
-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 64
- 교내에 붙인 대자보가 징계 사유? - 66
- 교실 밖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 68



6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학생 자치회 임원 자격? - 72
- 학생도 어엿한 학교 운영 주체입니다 - 74
- 동아리 자치권, 인정해 주세요! - 76
- 우리가 지킬 규칙은 우리 손으로! - 78



7 **복지에 관한 권리**

- 학교가 극한 체험장인가요? - 82
- 점심시간이 괴롭습니다 - 84
- 아플 땀 걱정 말고 보건실에 가요 - 86
- 생리 공결 제도를 아십니까? - 88



8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징계도 복불복? - 92



9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넌 짝했어 - 96
- 학생인권옹호관, 도와주세요! - 98



10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 안 가는 걸까, 못 가는 걸까 - 102
- 교육여행은 다같이 떠나요 - 104
-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 106
- 운동선수 이전에 학생이라고요 - 108
- 아르바이트, 똑똑하게 해야죠 - 110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 113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 129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133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길은 성적으로 통한다?

수호의 학교에는 '심화반'이 따로 있습니다. 심화반에 속한 학생들은 특별 자습실을 사용할 수 있고, 심화 특강, 프로젝트 수업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적순으로 심화반을 뽑기 때문에 아무리 원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었어? 심화반 자습실에는 칸막이 책상도 있고, 인터넷 강의 를 듣거나 모르는 부분을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까지 있대.”

“이번 수학시험 때 나온 어려운 문제들 있지? 그거 심화반 특 강에서 다뤘던 거래.”

심지어 교내대회의 경우, 심화반 학생들에게는 샘플과 대회 요강까지 나누어주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한 장짜리 공지문을 준 적도 있습니다. ‘역시 성적이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개네들이 워낙 열심히 공부하긴 했잖아. 노력한 것에 대한 보

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

수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기회조차 안 주어지는 거잖아. 그 건 차별 아니야? 스스로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더 없어질 거야.”

친구의 지적도 맞는 말입니다. 교내대회에 참여해도 상 은 모두 심화반 아이들이 받을 것 같아서 아예 참여 안 할 때도 있으니까요.

수호는 성적으로 인한 차별은 꼭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가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교내 독서실이나 기숙사 역시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산이나 공간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성적이 기준이 돼선 안 되겠죠. 성적 하나만으로 학생의 참여권이나 이용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114~115쪽 제5조



“남자가……, 여자가……” 이런 말 싫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왜 여자는 치마 교복만 입어야 해?”

수호의 여동생 인영이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만 되면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하네요. 인영이는 어릴 때부터 치마는 거들떠보지 않고 늘 바지만 고집했거든요. 엄마가 치마도 한번 입어 보자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죠.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간 뒤로는 매일같이 치마 교복을 입어야 하니 괴로워할 수밖에요.

어떤 학교에서는 여학생도 바지 교복을 입을 수 있는데, 인영이의 학교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수호가 생각하기에도 여학생이라서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것은 성차별적인 규칙입니다. 치마든 바지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입을 수 있도록 교칙을 정하고, 어떤 옷을 입더라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분위기라면 좋을 텐데요.



물론 남학생인 수호도 학교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할 말이 없지 않습니다. 똑같은 교칙을 위반해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무거운 실험 도구나 청소 도구를 깥깥거리며 나르는 남학생들을 보고 무심코 성차별적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가 그 정도는 들어야지”라고요.



“남자라서”, “여자니까”라고 구분 짓고, 그에 적합한 외모와 행동이 정해져 있다고 여기는 순간 성차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잘하는 분야가 따로 있다고 구분 짓는 것, 성별에 따라 두발 및 복장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또 특정 성별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말 역시 성 평등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성별 고정 관념을 넘어서서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114~115쪽 제5조



임신·출산이 정계 사유인가요?

“그러니까 말이다, 성 경험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동의가 중요한 거야.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혹은 처음에는 원했다라도 마음이 바뀔 수 있어. 그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꼭 알아야 한다!”

오늘 성교육 시간에는 모두가 다른 때보다 더 집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보니 수호도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수호 학교 친구에게 그런 일이 생기고, 두 학생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다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학교를 그만두겠지. 힘들어서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어?”

“안 그만두면 학교에서 강제로 전학시키지 않을까?”

“그건 아니지. 학교를 다닐지 말지, 전학 갈지 말지를 왜 학교에서 정해 주는데? 그건 그 둘이 결정할 일이라고.”

각자 의견을 말하느라 교실이 소란스럽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당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게 학생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과연 적절할까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키우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전학이나 퇴학의 압박까지 견뎌야 하다니, 수호에게는 좀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교를 계속 다니기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학업을 유지할지 어쩔지는 학생 스스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학생과 그 부모의 뜻에 반하는 학교의 자퇴 강요는 분명한 차별 행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고 밝히고, 해당 학생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와 사회는 임신한 학생이 심리적 충격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으로 인한 퇴학 처분이 학생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114~115쪽 제5조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말아요

수호의 학교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으로, 흔히 '다문화'라고 부르는 가정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어디서든 눈에 띄죠.

수호는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학교 다니기가 쉽지 않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멀쩡한 이름이 있는데, 굳이 '다문화'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또 급식 시간 때 김치 같은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한국 사람이 김치도 못 먹냐?" 하고 놀리기도 하고요.

사실 수호도 다문화 가정 친구들에게 살가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 문화가 낯설어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놀리거나 괴롭히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호는 학교에서만이라도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국적



이나 인종 등 사회적 환경의 차이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해봅니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출신 국가, 인종, 가족 형태 등 사회적 환경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국적 외모나 국적 등의 사회적 환경을 비하함으로써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는 차별 행위인 동시에 학생의 인권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외모 등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차별하는 것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 114~115쪽 제5조



정상 가정, 비정상 가족이 따로 있나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인영이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한글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자 써 온 자기소개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다. 가족 소개도 빠뜨리지 말도록.”

몇 해 전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 혼자 수호, 인영 남매를 키우게 된 이후로 인영이는 다른 사람 앞에서 가족 소개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자기소개서에 아빠와 같이 사는 것처럼 쓰면 안 되는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으면 좋겠니?”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6학년 때 친구랑 싸운 적이 있어. 그때 선생님이 나만 따로 불

러서 ‘엄마가 아빠 없이 혼자 너를 키우시잖니. 그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와 싸운 거랑 아빠가 같이 살지 않는 게 무슨 상관인지 몰라. 게다가 선생님이 나를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는 애 취급하는 것 같았어. 중학교에 올라와서까지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그런 취급 받기 싫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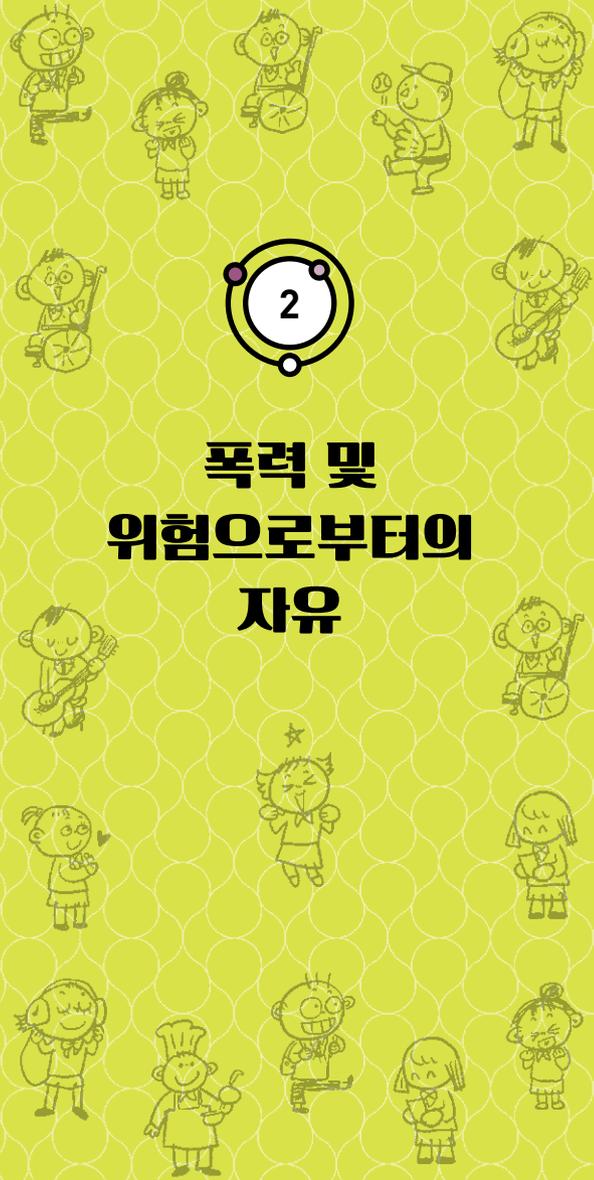
옆에서 인영이의 이야기를 듣던 수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영이는 언제나 밝고 명랑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문제로 아파하고 있었다니요. 게다가 자기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한부모 가정, 기초 생활 수급을 받는 가정, 조손 가정 등에 속한 학생에게 무심코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학생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환경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14~115쪽 제5조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랑의 벌?

수호와 친구들은 오늘따라 유난히 배가 고파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곧바로 야간 자율 학습 시간이지만, 밥을 먹고도 사라지지 않는 허기를 잠재우기 전에는 글자가 머리에 들어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 “야자도 식후경”을 외치며 기세 좋게 간식을 사 먹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 먹고 나니 야간 자율 학습 시작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결국 수호와 친구들은 야간 자율 학습 시간 내내 벽을 보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시간 보면서 간식 먹을걸’ 하는 후회가 드는 한편 반 친구들이 돌아보며 킁킁 웃는 걸 보니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꼭 이렇게 오랫동안 벌을 서야 할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셔도 충분히 알아들을 텐데…….’



슬슬 다리도 아파 오는데 아직도 야간 자율 학습 시간이 끝나려면 한참이 남았습니다. 수호는 선생님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학생의 지도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 학교 내 체벌 금지를 권고했으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학생의 행위에 잘못이 있을 경우 학교는 학교생활규정(학교규칙)에 따라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115쪽 제6조



흔계인지 화풀이인지 헛갈려요

복장 집중 단속 기간이었습니다. 모두들 등교하는 가운데, 생활지도 선생님 앞에 한 남학생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교문 앞에서건 교내에서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기에 수호를 비롯해 대부분 학생들이 무심코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생활지도 선생님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수호는 멍칫했죠. 앞서 걸던 학생들도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XXX야, 너 바지통이 왜 이렇게 좁아?”

‘교칙에 바지통을 줄여 입지 말라고 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애들이 지나다니는 데서 저렇게 큰 소리로 욕까지 해야 하나?’

수호는 등교 시간에 쫓겨서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교실로 와야 했습니다. 교실에 와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 여기저기서 그 선생님의 언어폭력에 대한 증언

이 쏟아졌습니다.

“너 같은 XX가 대학 붙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나중에 애 낳아서 딱 너 같은 XX로 키워라.”

그 수를 세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모욕을 받았다는 생각에 화부터 나더라고 했습니다.



학교에는 분명 교칙이 있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동시에 학교는 학생을 지도할 때 학생의 인격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교실이나 교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교사가 욕설 및 모욕적인 언어, 학생의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를 통해 학생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이는 학생 지도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엄연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물론 학교에서의 언어폭력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도 언어폭력으로 인한 상처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15쪽 제6조



사이버폭력이 무서워요

야간 자율 학습을 끝내고 밤늦게 집에 온 수호.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인영이가 거실에서 울먹이며 엄마와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 보니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이 분명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카톡에 초대했더라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평소 나랑 사이안 좋은 애들이 모여 있었어. 내가 들어가자마자 언제 찍혔는지도 모르는 내 얼굴 사진을 계속 올리면서 놀리는 거야.”

인영이는 너무 화가 나서 사진을 바로 지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계속 놀려 뒀고, 나중에는 욕설까지 퍼붓더랍니다. 인영이가 카톡방을 빠져나온 뒤에도 카톡 초대 메시지와 문자를 계속 보내더라나요.

“이거 완전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네.”

수호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버 불링에 대



해 말해 줍니다.

“학교 가기 무서워.”

인영이는 벌써부터 내일 학교 가기가 싫어집니다.



최근 들어 학교 폭력이 휴대폰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등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 가고 있는데, 이를 ‘사이버 불링’이라고 부릅니다. 사이버 폭력이 무서운 이유는 가해자들이 마치 게임하듯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에 무감각해지고 더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건 오프라인에서건, 학교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은 학생들이 두려워 할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모두들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15쪽 제6조



친근해서 그런 거라고요?

“○○고등학교 창문에 #METOO(미투) #WITHYOU(위드유) 등의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포스트잇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성희롱과 성추행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 저 뉴스! 안 그래도 오늘 학교에서 다들 이야기하던데.”

텔레비전을 보던 인영이가 말했습니다. 수호도 미투 운동에 대해 최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희롱과 성추행이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죠. 그런데 학교 안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니요!

“습관적으로 그러는 선생님들이 있어. 브래지어 근처를 툭 치거나, 여자는 애를 잘 낳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막 하기도 하고. 나름 친근감의 표현이러는데, 기분 나쁠 때가 많아.”

인영이의 대답을 듣다 보니, 올 초에 여자 교생 선생님에게 짓궂은 장난을 친 것도 성희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생 선생님이 얼굴을 붉힌 채 입을 꼭 다물고 교실을 나가 버렸거든요.

“난 선생님이 좋아서 그런 건데…….”

말끝을 흐리는 수호에게 인영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당하는 사람이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끼면 무조건 성희롱이야! 오빠도 명심해. 피해자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는지 오빠는 상상도 못 할 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중·고등학생 6,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고등학생이 9.5퍼센트, 중학생이 6.2퍼센트였습니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은 더 많아, 고등학생 37.8퍼센트, 중학생 30.2퍼센트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학교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포함)은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들 사이에, 교사들 사이에, 학생이 교사에게 등 누구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되며, 동시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더 큰 벌을 받습니다.

▶115쪽 제6조



학교에서 다쳐도 치료비 걱정 없어요

어제 하교하던 수호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같이 가던 친구가 뒤에서 밀었는데, 뚜껑이 열려 있던 배수구를 피하려다가 하필 그 옆에 있던 농구대에 부딪힌 거예요. 입술 주위로 피가 제법 나서 서둘러 병원에 갔고요.

다음 날, 수호가 등교하자 놀란 친구들이 주위로 몰려 들었습니다.

“야, 애 앞니가 두 대나 부러졌다잖아! 네가 밀어서 다친 거니까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한 아이의 말에 수호를 민 친구가 맞섰습니다.

“일부러 민 거 아니야. 나도 밀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농구대 쪽으로 민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치료비를 다 내야 해?”

급기야 반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보기로 했죠.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이 있단다. 이렇게 학교에서 다쳤을 때 치료비 같은 것을 보상해 주는 곳이야.”

간밤에 치료비가 걱정돼 한숨도 자지 못했던 수호는 선생님의 말씀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업 시간 등 교육 과정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못된 학교 측에 시설 관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 관리 및 감독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더라도 학교장에게는 학교생활 중인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고로 인해 학생에게 신체적, 심리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뿐 아니라 피해자 상담도 지원합니다. 다만 학교 안전사고와 무관한 사건·사고의 경우 공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15쪽 제7조



교육에 관한 권리





치마 짧으면 수업도 못 듣나요?

“야! 너희 이리 좀 와 봐.”

어느 날 아침, 교문 앞에서 복장 검사를 하던 선생님이 여학생 여러 명을 불러 세웠습니다.

“치마가 왜 이렇게 짧아? 저쪽에 가서 있어.”

때마침 교문에 들어서던 수호는 속으로 ‘다른 때도 아니고 시험이 코앞인데 좀 봐주지’ 하고 생각하며 교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 화장실에 다녀온 친구가 복장 검사에 걸렸던 여학생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침에 치마 짧아서 걸렸던 애들 얘기 들었냐? 걔네들 1교시 수업도 못 듣고 교문 앞에 계속 붙잡혀 있었대.”

“치마 짧게 입은 게 수업도 못 들을 만큼 잘못된 거야?”

얼마 전 수호도 수업에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수업 시간 내내 교실 밖에서 서 있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수호가 예습해 온 부분을 공부하는 날이라 수업에 참여 못한 게 더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니, 그 친구들의 상황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보장해야 할 학생 인권 중 핵심적인 기본권의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 즉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복장 지도가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을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생 지도나 조사 등을 이유로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됩니다.

학생이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학교는 보호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115쪽 제8조



'자율' 없는 자율 학습

“수호야, 너 다음 달 급식 당번 됐더라?”

아침, 교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친구 녀석이 쪼르르 달려와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으, 이번 달 몇 번 야자를 빠졌더니…….”

수호네 반에서는 야간 자율 학습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매달 집계합니다. 제일 적게 참여한 학생 세 명은 그다음 달 급식 당번, 주변, 칠판닦이, 특별 구역 및 교실 청소 등을 해야 합니다.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을 때만 해도 ‘나만 안 걸리면 되지’ 생각했는데, 막상 자신이 걸리고 보니 기분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30분간 있는 0교시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다가 피해를 본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0교시 수업에 불참했다고 불이익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 했는데, 0교



시 수업에서 푼 문제가 중간고사에 출제된 겁니다.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서 ‘자율 학습’이란 이름이 붙은 것 아닌가요?



지금은 야간 자율 학습이나 0교시 수업, 방과 후 수업 등 학교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불참시 벌점을 부여하거나 반성문을 내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강요는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5~116쪽 제9조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드디어 3교시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호와 친구들의 배꼽시계는 종소리가 들리기 한참 전부터 요동쳤고, 마음은 이미 매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열심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좀 울렸어요~!”

참다 못한 친구 하나가 소리쳐 봤지만 선생님은 묵묵부답. 결국 종소리가 울린 지 5분여가 지나야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 선생님은 수업을 매번 늦게 끝내기 때문에 매점은커녕 화장실 다녀오기도 빠듯할 지경입니다.

결국 겨우 화장실만 다녀온 수호는 배가 고파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날은 허겁지겁 점심을 먹는 통에 배탈이 나기 십상입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중요하네.’



솔직히 쉬는 시간 10분도 그리 여유 있는 편이 아닌데, 그마저도 반 토막이 나 버리는 상황에 기본이 착잡해졌습니다.



휴식권은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수업과 수업 사이에 주어지는 10분간의 휴식은 학생들이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윤희유와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쉬는 시간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과정 중 일부인 것이죠.

따라서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사유 없이 일상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쉬는 시간을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한 학생인권조례 위반 사항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신체적, 정신적 휴식을 누릴 시간이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116쪽 제10조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영어라니요!

기자가 꿈인 수호는 중학교 3년 내내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NIE나 토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을 신청해 나름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 2학년이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학교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영어 회화 수업으로 변경하며, 2학년은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게다가 말로는 영어 회화라고 해 놓고,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 보니 내내 문법과 독해, 어휘 등 시험에 필요한 공부만 시킵니다.

그렇지 않아도 2학년이 된 뒤로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에 치중된 시간표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창의적 체험 활동마저 영어 수업으로 채우니 수호는 정말 괴롭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는 이런 공부 말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생각이 커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술, 음악, 체육 등 입시 압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시간마저 변칙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으로 대체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학생들 뜻은 묻지도 않고 축제, 교육여행, 체육대회 같은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내년이면 고3이니 공부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축제나 교육여행 등이 없어져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등 네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활동 대신 이른바 주요 과목이라 불리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주요 교과를 보충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 해도 학생에게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까지 박탈하는 행위는 고쳐져야 합니다.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이를 위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합니다. ▶116쪽 제11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원색 외투도 입고 싶어요

“인영아, 이러다 지각할라. 아무거나 입고 가.”

날씨가 꽤 쌀쌀해진 요즘, 수호의 집에서는 아침마다 인영이와 엄마가 실랑이를 벌입니다. 등교 시간이 다 돼 가는데도 외투들을 꺼내 놓고 고르지 못하는 인영이에게 엄마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왜 꼭 외투는 무채색만 입어야 하나요!
우리 교복은 빨간색 코트가 어울리는데.”

외투뿐만이 아닙니다. 인영이네 학교에서는 신발과 양말의 색깔까지 단속한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어떻게 하복 안에 흰색 티셔츠만 입을 수 있냐며 죄 없는 엄마에게 한바탕 화풀이를 했던 인영이입니다.

수호도 학교의 복장 규제에 불만이 많습니다. 교복 상의를 벗어 두고 점퍼만 입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랬다가는 교문 앞에서 생활지도부 선생님에게 지적당하기 십상



이거든요.

‘자유로운 환경이 창의성을 키운다는데.’

수호는 이 상황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교복 속에 색깔 있는 티셔츠를 입거나 교복 상의 대신 점퍼를 입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나친 단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한 두발과 복장으로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이 가벼운 즐거운 등굣길,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통해 두발과 복장에서 학생에게 자기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학교 단위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 116쪽 제12조



내 머리는 자연 머리에요



등굣길,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교문 앞에 긴 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 모두 갈색 머리, 길게 푼 머리, 파마를 한 머리입니다.

‘앗, 오늘이 두발 검사를 하는 날이구나.’

그 순간 누군가 어깨를 톡 치며 말을 겁니다.

“너도 염색한 거 아냐? 머리 갈색 같은데?”

돌아보니 반 친구입니다.

“아냐, 난 타고난 갈색 머리아. 외사촌들도 모두 이렇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심 마음이 짹짹합니다. 실제로 선생님께 몇 번 지적받은 적이 있거든요. 괜히 긴장되고 주눅이 드는 이유입니다.

인영이 역시 중학교에 입학한 뒤로 두발 규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눈치입니다. 두발 길이의 제한은 없지만, 일정한 길이가 되면 무조건 하나로 묶어야 한다며 투덜거

리곤 하거든요.

왜 긴 머리카락은 꼭 묶어야 하나요? 왜 우리는 파마나 염색을 하면 안 되나요?



학생 두발은 통제나 규제돼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권(자기결정권)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임을 밝혔습니다(2005년). 또 2018년 9월에는 서울교육청이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할 경우, 서울의 모든 중·고등학생은 두발 길이는 물론 염색, 파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116쪽 제12조



막무가내 소지품 검사는 싫어요

매점을 다녀오는 길, 옆 반을 지나는데 여학생 몇몇이 교실 밖에 서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마침 지나가는 옆 반 민주에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소지품 검사를 했어” 하고 대답합니다.

“아무리 담임 선생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갑자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건 사생활 침해 아니야?”

지난번 소지품 검사 때 BB크림과 티트를 압수당한 민주는 잔뜩 불만이 쌓인 듯하네요.

반면 수호의 담임 선생님은 꼭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번은 친구의 휴대폰이 없어졌는데, 반 친구들 전체가 주머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꺼내고 가방, 사물함까지 털 털 털어야 했습니다. 다들 문제 학생으로 의심받는 느낌이

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친구가 “아, 생각해 보니 아침에 엄마한테 휴대폰을 맡기고 나왔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나 친구가 알밋던지. 모두들 허탈해했습니다. 선생님도 모두에게 미안해하셨고요. 그날 이후 ‘뒤지는 느낌’이 드는 소지품 검사는 없어졌습니다.

무안한 표정으로 교실 밖에 서 있는 친구들을 보니, 더 많은 반에서 갑작스러운 소지품 검사가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칙 등 학교 규정에 위반되는 물건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될 때 질서 유지나 교육을 목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교칙에 반하는 물건을 갖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해도,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16~117쪽 제13조

연애하면 무조건 풍기 문란?

수호의 학교는 남녀 공학이지만, 반은 남자반 여자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주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럴 거면 왜 굳이 남녀 공학을 만들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내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다녔다며, 벌점을 무려 30점이나 받았습니다. 수업 중 조는 경우 2점, 흡연 시 15점인 것에 비하면 정말 가혹했죠.

사실 두 학생은 오랫동안 사귀어 온, 학교에서 나름 유명한 커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두 학생의 스킨십을 문제 삼아 벌점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학생들 역시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정말로 두 친구가 벌점을 30점이나 받고, 선도 위원회에 회부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들



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는대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교육적인 목적이라 해도, 학생들의 친구 관계까지 교사 또는 학교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로요.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든, 교사가 선입견을 갖고 학생들의 인간관계 형성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연애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 징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교규칙을 통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6~117쪽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휴대폰 사용, 생활 협약으로 해결해요

2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까요? 교실 어디에선가 휴대폰 벨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 보니 한 친구가 부라부라 휴대폰 전원을 끄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선생님에게 들킨 뒤였습니다.

“그거 들고 나와. 수업 시간에 휴대폰 갖고 있는 거 교칙 위반인 거 알지?”

수호의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 전, 휴대폰을 수거함에 담아 따로 보관합니다. 친구는 제출하는 것을 깜빡 잊은 것입니다.

‘억울하긴 하겠지만 규칙은 규칙이니까.’

수호의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중 휴대폰을 갖고 있다가 들키면 1회 일주일, 2회 2주일 등 휴대폰 압수 기간을 정해 뒀습니다.

“선생님, 오늘 엄마가 동생 유치원 학교를 도와달라고 해서 어

쩔 수 없었어요. 학원 갈 때도 그렇고, 수시로 휴대폰을 써야 하는데 압수하는 건 너무해요.”

‘흠’ 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

“솔직히 수업 중간에 벨 소리 울리면 방해되긴 하죠.”

“그래도 며칠간 휴대폰을 못 쓰게 가져가는 건 지나친 것 같아요.”

결국 수호의 반에서는 압수 대신 방과 후 돌려주는 것으로 새로 생활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 기기를 가져오거나 쓰는 것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한해, 기기를 소지하는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제한 범위는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정해져야 합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업 시간, 자율 학습 시간 외의 시간까지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전자 기기 소지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제 방식 대신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적합한 방식으로 관련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소지품 압수에 대해 일정 요건(제13조 제2항)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전자 기기에 대해서도 압수 요건, 보관 및 반납 방법 등을 규칙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6~117쪽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개인 정보, 지켜 주세요

“얘들아, 영어 수행 평가 성적표 나왔어. 1분단부터 돌릴 테니까 자기 점수 확인하고 사인해. 점심시간 전까지 영어 선생님 드려야 하니까 빨리빨리 해서 돌려.”

1교시 시작 전, 회장이 영어 수행 평가 성적이 기록된 성적일람표를 보여 주면서 반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1학년 때부터 수시로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다들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점수를 확인하고 서명을 한 뒤 뒷자리로 보냈죠.

그러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친구가 자기 성적을 확인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점수를 모두 본 거예요. 그러고는 반 아이들이 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말했습시다.

“야, 너 영어 수행 평가 2점이야. 시험을 발로 찼냐? ㅋㅋ.”

자신의 성적을 공개당한 친구는 얼굴을 붉히며 허둥지

둥 뛰어가 친구의 손에서 성적표를 낚아챘습니다.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인 정보인 성적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호는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기 점수가 모두에게 알려지는 걸 좋아하는 애는 없을 텐데, 우리는 왜 이제까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아무리 적법하게 수집했어도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만약 학생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 학생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라 해도 반드시 정보 제공의 목적과 범위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사전에 해당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학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을 텐데, 이를 그냥 흘려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생의 성적, 가족, 교우 관계, 병력, 기초 생활 수급 여부, 급식 및 수업료 지원 여부, 징계 사실 등을 당사자의 뜻과 무관하게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것이 고의든 아니든 말입니다. ▶117쪽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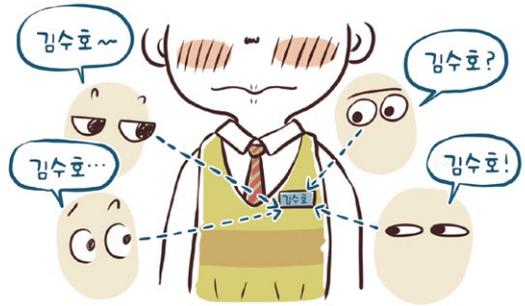
내 이름은 동네북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 이름표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굣길에서 만난 친구가 어젯밤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일어난 일을 수호에게 털어놨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자신을 힐끗힐끗 훑쳐보며 저희끼리 속닥이더니 키득키득 웃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자기 이름이 불만스러웠던 친구는 얼굴이 화끈거려 혼났다고 합니다.

수호의 학교 이름표는 형겅 재질로, 교복 가슴 부위에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하교 때 이름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한참 전부터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땀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이름표로 바꿔 달라고 했지만, 학교는 교복 분실을 방지하고 이름표가 부서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해 왔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도 왜 굳이 이름표를 달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합니다. 수호는 교내 착용까지는



이해하겠지만, 학교 밖에서 이름이 노출되는 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빼앗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생활 지도 및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름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표를 땀다 붙였다 하지 못하게 만들어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사생활의 비밀을 지킬 권리가 있으니깐요. 게다가 이름이 노출되면 각종 범죄에 휘말릴 위험도 있고요. 개인 정보 노출을 학생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시정이 필요합니다.

▶117쪽 제14조

내 정보를 내가 못 고친다고요?

수호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인 사촌 형이 있습니다. 형은 얼마 전부터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과 의견 충돌을 겪었다고 합니다.

형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생활 기록부에 붙일 사진을 내야 했는데, 새로 사진을 찍지 못해 1학년 때 것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고 보니 문득 생활 기록부의 자기 사진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중이 상당했기 때문에 사진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얼굴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전보다 자신있는 현재 모습의 사진이면 좋겠다고 생각한 형은 담임 선생님께 생활 기록부 사진을 바꿔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보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바꿔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다시 한 번 요청했지만,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학생이 한두 명도 아닌데, 개인적이고 자잘한 사정들을 다 배려해 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불가침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를 비롯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합니다. 이를 ‘정보 관리 통제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정보의 정정 및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개인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학생에게 알려 줘야 합니다.

▶117쪽 제15조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강요에 의한 반성문은 싫어요

유난히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수호에게 그날은 그런 날이었고요. 마침 인영이는 수호의 컴퓨터를 쓰다가 망가뜨렸다고 고백했고, 엄마는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내 잔소리를 했습니다. 함께 등교하던 용준이는 갑자기 전화해서 몸이 아파 오늘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합니다. 결국 수호는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종례 시간까지 반성문을 써내라.”

그런데 오늘 수호는 도저히 반성문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인영이도, 용준이도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그래도 억지로 반성문을 써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트 반 장도 안 채우고 이게 무슨 반성문이야? 다시 써. 글씨 작게 해서 두 장 빼곡하게 채워 와라.”

‘지각이 노트 두 장을 채울 만큼 큰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선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아침 7시 20분까지 학교에 와서 벌 청소를 해야 하거든요.

수호는 빈 노트를 내려다보며 크게 한숨을 내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성 없는 반성문,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는 등 잘못을 저지르거나 공동체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교사로서 훈계나 훈육의 일환으로 반성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학생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의 양심에 반해 거짓으로 뉘우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훈육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지 벌을 피하거나 가볍게 해 주는 대가로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진정한 뉘우침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본래의 교육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117~118쪽 제16조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학교는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한 종립(宗立) 학교입니다. 흔히 '미션 스쿨'이라 부르죠. 그런데 평준화 고등학교이다 보니 수호처럼 종교가 없는 학생도 많고,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도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일방적으로 매일 아침에 찬송가를 들려줍니다. 원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찬송가를 들으며 등교해야 합니다. 또 월요일 조회 시간이 되면 교장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 과정으로 정해진 종교 수업의 경우, 이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수업이 있는데도 선생님들은 가급적 종교 수업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은 매주 금요일마다 참석해야 하는 종교 행사입니다. 간혹 이 행사에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가지 않겠다고 해도, 무시당하기 일쑤입

니다. 게다가 선생님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 때문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불참하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졸업한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야. 예전에는 학생회 임원이 되려면 교회에 1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2, 3학년이 돼서 학생회 임원을 하고 싶다면 1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녀야 했다는 거예요. 이 규정은 졸업한 선배들이 여러 차례 건의한 덕분에 사라졌지만, 학교는 여전히 기독교를 믿는 임원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함께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 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대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의 종교 행위 및 종교 교육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물론 종립 학교는 특정 종교의 성격과 추구하는 가치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설립됐기에 일정한 범위에서 종교 교육과 운영에 대한 자유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기도를 종용하거나 종교 행사에 불참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마땅합니다.

▶117~118쪽 제16조



교내에 붙인 대자보가 징계 사유?

얼마 전 수호의 학교 학생회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 조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설문 조사와 달리 학생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등교 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학생회장이 주도한 조사였기 때문인 듯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등교 시간을 지금보다 조금 늦추는 쪽에 찬성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속으로 등교 시간이 조정되리라 기대했죠.

그런데 며칠 뒤 학생회 임원들이 학교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규칙 개정과 관련한 설문지를 학교규칙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학생회는 설문 조사의 정당함을 밝히고, 학교의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자보를 교내 복도와 건물 벽 등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정해진 장소에 대자보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회 임원들을 불러 또다시 주의를 줬습니다.



서명 활동이나 설문 조사, 교내 언론 활동, 전단지 배포, 집회 등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들입니다. 학생은 다른 사람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설문 조사를 하거나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를 무조건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의한 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118쪽 제17조



교실 밖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수호야, 재 좀 말려 봐. 자꾸 거리 캠페인 나가겠다고 난리다.”

방학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된 어느 아침, 엄마가 인영이 좀 말려 보라며 도서관에 가려는 수호를 현관에서 붙잡아 세웠습니다. ‘거리 캠페인’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수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 철없는 게 뭘 안다고……. 요 며칠 뭘 만드다며 집에 늦게 오더니 아마 캠페인할 때 쓸 걸 만든 모양이야.”

엄마 손에 끌려 나온 인영이는 입을 비죽였습니다.

“야,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이 뭘 한다고?”

“어휴, 오빠까지 왜 그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거리 캠페인에 가려는 거거든? 왜, 뭐가 잘못됐어?”

인영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수호는 조금 머쓱했습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캠페인 이야기는 진즉부터 알고 있었지만, 가 봐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보다 어린 인영이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니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빠로서 조금 창피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캠페인은 인영이가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요. 직접 참여하겠다고 결심한 인영이가 오히려 저는 기특하게 느껴져요.”

수호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날의 민주 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 역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아직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공동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면 학생들의 결사 및 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보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교육이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학생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118쪽 제17조



자치 및 참여의 권리





학생 자치회 임원 자격?

학기 초, 학급 임원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수호의 친구 용준이도 이번에는 후보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그래, 네가 공부는 잘 못해도 성격 좋은 건 인정하마. 내가 확실히 응원해 줄게!”

수호가 용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려는데, 또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자격이 안 돼서 임원 못 될걸? 작년에 별점 20점 받았잖아. 1년 이내 교내 봉사 활동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임원이 될 자격이 없어.”

“뭐라고? 억울해. 반성문도 썼고, 봉사 활동도 열심히 했고, 별점도 없어졌다고.”

수호도 용준이에게 공감했습니다. 작년에 몇 차례 휴대 폰을 쓰다 걸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교칙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용준이는 누구보다 마음이 넓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을뿐더러 리더십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학교 다닐 때 꼭 한 번 임원 해 보고 싶었는데…….”

아쉬워하는 용준이를 보는 수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는 학생 자치 조직의 피선거권을 성적이나 징계 사유 등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학생 자치 조직의 대표는 학생들의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8~119쪽 제18조



학생도 어엿한 학교 운영 주체입니다

2학기에 들어서면서 학교 전체가 축제 이야기로 들쭉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 동아리의 공연과 전시로 채워져 김빠졌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다들 축제에 참여할 방법을 찾아 이런저런 궁리를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호는 축제 현장 곳곳을 누비며 흥미로운 기삿거리를 발굴해 소식지 만드는 역할에 지원했습니다.

수호의 학교에 불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은 올해 초 신입생 입학식에서 비롯됐습니다. 학생회가 학생 자치 활동의 하나로,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거죠. 그중 신입생 학급과 선배 학급 간 친선 축구 경기는 특히 인기였어요. 학생회가 경기 일정과 방식을 직접 계획하고 축구 동아리가 경기 진행을 맡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한편 학생회가 이번 축제에 선보이려고 야심차게 준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생 자치 법정’.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규정하는 상·벌점제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가지기로 한 것이죠.

솔직히 수호는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생회란 학생 대표들인 임원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회의하거나 가끔 캠페인 등 봉사 활동을 하는 모임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학생회가 각종 학교 행사를 직접 개최하면서 설문 조사나 공청회 등 학생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했고, 거기에 직접 참여하다 보니 학생회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학생 자치 조직은 학생 자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용을 제공받을 권리와 학교 운영 및 학교규칙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체 주관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죠. 이와 더불어 학생은 학생회를 통해 자신들의 복지 개선은 물론 학교 운영 주체의 일원으로서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 대표들은 이러한 권리를 토대로 학생 전체를 대표해 학교에 의견을 전달, 학교 운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물며 부당하게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118~119쪽 제18조



동아리 자치권, 인정해 주세요!

수호의 학교에는 방송, 사진, 댄스, 독서, 기악 합주, 농구, 축구, 마술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취미와 관심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이 동아리의 백미는 누가 뭐라 해도 학교 축제죠. 학교 축제를 준비하는 주축은 학생회이지만, 실제 축제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은 각종 동아리가 맡으니까요. 물론 각 동아리가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문제가 생기면 학생 자치 조직인 학생회가 나서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축제 준비가 시작되면서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했습니다. 학생회에 가장 먼저 문제 해결을 요청한 동아리는 댄스 동아리였죠. 꽤 오랫동안 축제를 준비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아리 지도 선생님이 공연 시간을 대폭 줄이라고 통보한 거예요. 이미 정해진 시간에 맞춰 안무를 짜고 연습도 막바지에 이

르렀는데 갑자기 줄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수밖에요.

얼마 뒤에는 독서 토론 대회를 준비하던 독서 동아리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도 선생님과 사서 선생님이 동아리 회원 일부를 탈퇴시켰기 때문입니다. 해당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자주 빠진다는 게 이유였죠. 독서 동아리 회장을 비롯해 다른 회원들은 아무리 그래도 회원들의 동의 없이 탈퇴시키는 것은 회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교내 동아리는 그 특성상 지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동아리 역시 엄연한 학생들의 자치 조직인데, 회원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선생님과 학교가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회, 동아리, 소모임 등 자치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습니다. 학교장 및 교직원원은 학생 자치 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 자치 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 자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학생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학생 자치 조직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118~119쪽 제18조



우리가 지킬 규칙은 우리 손으로!

“다음 주부터 지각하면 벌금 1,000원이다. 알겠나?”

며칠 전 교내 방송으로 진행된 아침 조회에서 교감 선생님이 “요즘 들어 지각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라고 하시더니, 그새 담임 선생님이 새로운 규칙을 만드신 모양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을 나서자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이야.
그러니까 회장이 선생님께 다시 말씀드려 봐.”

이런 일이 비단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호의 학교에서는 매 학기 초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했다고 게시판에 공표하는데, 수호를 비롯해 많은 학생들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개정됐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 거기 모인 대의원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한 번 개

정되면 적어도 한 학기 동안은 모든 학생이 따라야 하는 규정을 일부 학생들의 의견만 들어서 바꾸다니요.

더 큰 문제는 대의원들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가한 대의원 대다수가 두발 규제를 반대했음에도 나중에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는 버젓이 두발 규제에 대한 항목이 살아 있었으니 말입니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적용될 규범인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과 개정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학교 운영 위원회는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견 반영 방법으로는 설문 조사나 토론회, 공청회 등이 있으며, 학교는 이를 통해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학칙의 제정 및 개정 결과에 반영해야 합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곧 학생 인권을 실현하는 밑거름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직 미성년인데……’ 하는 막연한 우려를 근거로 학생들의 참여권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9쪽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학교가 극한 체험장인가요?

“야, 창문 좀 열어 봐. 더워 죽겠다.”

“열면 뭐 하나? 뜨거운 바람만 들어오는데…….”

5월을 넘어서면서 창가 쪽 자리 친구들과 복도 쪽 자리 친구들과 사이에 때 아닌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차라리 한여름이면 에어컨이라도 자주 틀어 줄 텐데, 더위가 막 시작되는 5월 하순쯤에는 체감 더위가 이미 한여름인데도 절대기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틀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체육 수업이라도 하고 난 뒤에는 마흔 명에 달하는 남학생들이 내뿜는 열기로 교실 안은 말 그대로 찜통이 됩니다. 학교에 아무리 건의해도,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 시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선풍기라도 많으면 말을 앓겠는데, 교실에는 고작 벽걸이 선풍기 두 대뿐이어서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



입니다.

이쯤 되니, 수호는 학교에 공부를 하러 오는 건지 극한 체험을 하러 오는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도한 전기요금 등을 이유로 쾌적한 냉난방에 소극적인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교내에서 진행되는 공사 때문에 소음과 먼지 등 공해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좋지 않은 교실 채광 때문에 수업 및 일상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지내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청결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9~120쪽 제22조



점심시간이 괴롭습니다

4교시를 마치는 종이 울리고 나면 점심시간입니다. 그런데 수호는 그 시간이 그리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수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소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풀만 줄 수가 있냐?”

“어제 카레! 맛도 맛있지만, 어떻게 당근이랑 양파만 보여?”

오늘 메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 다. 조금 늦게 식당에 도착하면 반찬이 떨어졌다고 양을 적게 받거나 밥이 다 떨어졌다고 빵과 음료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율 배식이라 그렇다고는 하지만 급식비도 똑 같이 냈는데 매번 억울하긴 합니다.

“회장, 우리 급식 문제를 학생회 차원에서 개선해 보자.”

“그래, 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해 달라고 하자.”

한 친구가 제안하자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의견을 내놓 았습니다.

“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에 넉넉히 준비해주면 좋겠어.”

“만약 자율 배식이 문제라면 자율 배식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 지 않을까?”

“급식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급식 비 사용 내역을 올려달라고 하자.”

다들 뜨겁게 호응했고, 다양한 개선안들이 나왔습니다. 회장은 조만간 학생회에 정식으로 건의해 보기로 약속했 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수호는 마음이 설렙니다.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한 학교는 급식 재료 및 급식 업체 등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을 조사,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할 책임 이 있습니다.

급식에 대한 학생의 권리는 학생 인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 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 장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나아가 학습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학생 들의 급식에 대한 권리는 의미가 큼니다. ▶120쪽 제23조



아플 땐 걱정 말고 보건실에 가요

“으악!”

체육 시간에 배구 시합을 하던 중 수호는 코트 건너편에서 날아온 공을 받아 내려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한쪽 어깨를 심하게 부딪혔죠. 순간 어깨와 팔뚝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수호는 친구의 부축을 받아 서둘러 보건실에 갔습니다. 보건실 선생님은 어깨와 팔뚝 여기저기를 살피더니 응급 처치로 파스를 붙이고 어깨 밴드로 어깨와 팔뚝을 고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처치를 받고 교실로 돌아왔지만, 시간이 가도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아파 왔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수업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자리에 앉아서 끙끙대기만 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까지 맺힌 수호의 얼굴을 보고 선생

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네요.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다쳤어요, 선생님. 그런데 수업에 빠지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단으로 수업에 빠지는 게 아니라서 괜찮아. 질병 결과로 처리할 테니까 어서 보건실에 가 보렴.”

수호는 그제야 편한 마음으로 보건실로 갔습니다.



학생에게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는 건강권에 의한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학생들이 편안하게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 사업을 실시할 때에도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 학생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20쪽 제24조



생리 공결 제도를 아십니까?

“아파도 학교는 가야지. 보건실에서 좀 쉬면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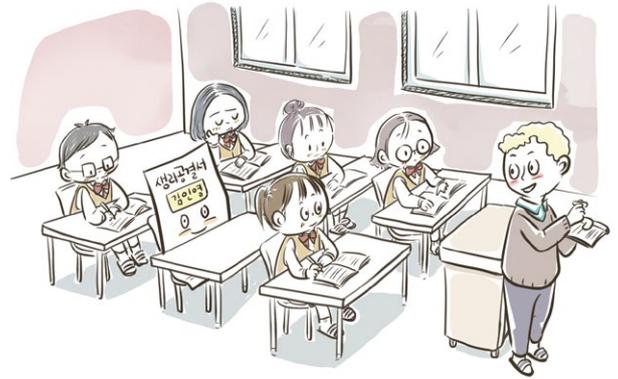
“그게 우리 맘대로 되는 줄 알아?”

인영이가 몸도 일으키지 못하고 끙끙거립니다. 엄마도 어쩔 줄 모르고 안타까워만 합니다. 많은 여자가 겪는다는 생리통 때문입니다. 인영이는 매달 생리 때가 되면 아파서 어쩔 줄 몰라합니다.

수호는 등굣길 버스에서 여학생들이 생리통으로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생리 공결 제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생리 공결 제도 : 생리 때문에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여학생의 건강권과 모성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오오! 이런 제도가 있었네. 그런데 왜 참는 거지?’



그런데 그 뒤로 학교 분위기가 마음 편하게 이용하기 힘들다,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워 차라리 진통제를 먹고 버틴다는 사연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그럼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아닌가?’

수호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생리 공결 제도 정비를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각 학교는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는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출결이나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리 공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학생이 여전히 많습니다. 제도의 참뜻이 현실적인 힘을 갖도록 학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120쪽 제24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징계도 복불복?

“아직도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안 한 사람?”

담임 선생님이 굳은 얼굴로 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난달부터 틈날 때마다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라고 말해 왔는데요. 수호는 곧장 했지만,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도 제법 되는 듯했습니다.

“만약 내일까지 하지 않으면 벌점 3점이다. 알겠나?”

선생님이 교실을 나간 뒤 반 친구들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반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선생님이 즉흥적으로 처벌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른바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명목으로 진행되는 처벌인 셈이죠.

몇 달 전에는 한 친구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반성문 쓰는 벌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고민 상담

코너에 학교생활에서 겪은 불편함과 불만을 털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리고 보니 교칙에 없는데도 선생님의 지시가 곧 학칙이 돼 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듯했습니다. 용의 복장에 관해서나 무례함, 불손함, 학생의 품위 위반 같은 기준은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징계 사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수호는 학칙의 기준을 벗어난 처벌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규칙을 내세워 별점을 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요.



학교는 학생들에게 보장된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교육적 차원에서 제한하게 되는데, 이는 학교에 위임된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의 내용은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것이어야 합니다. 피치 못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규칙에 따라야 하고요. 또한 자유의 제한은 학생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야 하죠. 위의 사례처럼 교칙을 기준으로 직접 해석하기 모호한 상황을 학생들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담당 교사가 임의적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각기 다르게 처벌하는 것 역시 부당합니다. ▶120쪽 제25조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넌 짝했어



“너 머리 색깔이 왜 이렇게 노랗니? 염색한 거 아니야?”

자율 학습 감독을 하던 생활 지도 선생님이 갑자기 수호의 짝 승윤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승윤이의 얼굴은 ‘또야?’ 하는 표정입니다. 사실 승윤이는 몇 달 전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당연히 반성문을 쓰고 사흘 동안 교내 봉사를 해야 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도 선생님들이 유난히 승윤이를 자주 지적합니다.

담배 냄새가 난다고 교무실에 계속 서 있게 한다거나 수업 시간에 졸면 또 불법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아니냐며 방과 후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수호가 보기에 승윤이는 충분히 반성하고 교칙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선생님, 승윤이 원래 머리 색깔이 그래요. 염색한 거 아니에요.”

참다 못해 수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당황하고, 승윤이는 더 당황해서 수호를 잡아끌었지요.

나중에 승윤이가 말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더 이상 일 키우기 싫어. 선생님 말 안 들었다고 나중에 더 혼날걸.”

‘한 번 잘못했다고 승윤이가 계속 문제 학생 취급을 받는 게 맞는 걸까?’

수호는 생각합니다.



학생은 자신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옹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측에 문제 상황을 일으킨 당사자로 인식된 학생이라면 이후 받게 될 수도 있는 처벌이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부당한 힘의 행사나 명령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20쪽 제26조



학생인권옹호관, 도와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권을 책임질 ‘인권선생님’입니다.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조례 때 담임 선생님과 들어온 역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우리 학교에도 인권선생님이 생기다니요.

사실 그동안 별 서너라 수업을 못 듣거나 자율 학습에 빠졌다고 벌점을 받거나 외모에 대한 평가를 듣는 등 각종 사건이 생겨도 불편한 마음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호가 평소 좋아하던 역사 선생님이라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선생님한테 털어놨다가 불이익을 받을 거 같다? 그럼 ‘학생인권옹호관’을 찾으면 돼.”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학생 인권 침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해 구제 신청을 하면, 비밀을 보장받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일도 없다고 합니다.

“학생이라서, 미성숙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너희의 인권이 침해되서는 안 돼. 학교는 너희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인 만큼 너희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어야 해.”

역사 선생님의 이야기에 반 친구들은 감탄의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수호도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합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이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조례’에 따라 학생 인권 실태 조사,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권리 구제, 인권 교육 등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학생 인권 지킴이’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 인권 상담 및 권리 구제

각 권역별 담당 인권조사관 4명이 학생 인권 상담 실시

- 전화 상담 : 02)3999-081~084 (권역별 전화번호는 뒤표지 참고)
- 방문 상담 : 학교보건진흥원 4층 415호 학생인권교육센터
- 홈페이지 상담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 신고/상담 → 신고 안내 → 구제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singo@sen.go.kr)로 발송
- 전화, 방문 이용 시간 : 평일 09:00~18:00 (단 금요일 8:00~17:00)



학생은 학교 안팎에 마련된 구제 절차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당한 학생뿐 아니라 이를 목격하거나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 관계 기관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120~121쪽 제27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안 가는 걸까, 못 가는 걸까

수호네 반에서 교육여행을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내 친구네 학교는 국내로 갈지 해외로 갈지 설문 조사를 했는데, 제주도로 가자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대.”

“우리 학교도 그런 설문 조사를 할까? 그럼 나는 뭘 선택하지? 국내로 할까, 해외로 할까.”

교육여행은 당연히 국내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 수호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안 형편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 해도 엄마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혼자 쓰는 것이 미안했죠.

금요일 오후, 회장이 월요일까지 제출하라며 교육여행 장소에 대한 설문 조사 용지를 나눠 줬습니다. 그런데 3박 4일간의 교육여행 후보지가 전부 해외였습니다.

1안 : 캄보디아 122만 원

2안 : 중국 100만 원

3안 : 백두산 125만 원

“너는 어디 가고 싶어?”

옆자리 친구가 잔뜩 들뜬 얼굴로 물었지만, 수호는 “글썄……” 하며 말끝을 흐리고 말았습니다.

‘교육여행도 학습의 연장인데……. 갈 수 있는 애들만 해외로 가기보다 다같이 국내로 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수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권선생님의 한마디



우리 주위에는 장애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학생을 ‘소수자 학생’이라고 부르는데,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소수자 학생이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변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소수자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보장해야 하는 권리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교육여행 등 교육 활동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21쪽 제28조



교육여행은 다같이 떠나요

요즘 수호의 반 아이들 관심은 온통 교육여행뿐입니다. 몇몇 친구들은 벌써부터 팀을 짜서 안무를 연습한다 하고, 또 몇몇은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감시망을 피해 일탈과 해방감을 만끽할지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요. 3박 4일의 여행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예비 수험생으로서 감수해야 했던 입시의 압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수호는 교육여행이 주는 설렘을 누구나 만끽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반은 아니지만,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때문이었죠. 두 다리가 불편한 친구는 평소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는데, 교육여행에 보조 인력이 따라와야 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친구의 경우 복지관에서 파견된 활동 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육여행까지는 힘들다더군요.

“아쉽지만 교육여행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장애인 친구의 말이 오랫동안 수호의 귓가에 머물렀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 학생의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장애 학생이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 물적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정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장애 학생이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인력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생님과 친구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121쪽 제28조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려 한다.
지금 나눠 주는 이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사람씩 면담하도록
하자.”

새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뒤로 일주일이지났
습니다. 오늘은 수호가 상담하는 차례. 교무실로 찾아가니
수호의 앞 번호 친구가 선생님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여기에 적은 게 사실이니? ‘저는 게이입니다?’”

수호를 비롯해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시
선이 친구에게 쏠렸습니다. 그제야 수호는 설문지를 낼 때
앞에서 키득거리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게이라고 한번 써 보자.”

“그렇까? 재미있겠다!”

친구들이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칸에 장난으로 ‘저는

게이입니다’라고 적었던 거죠.

이미 교무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들로 뻐뻐한데, 담임
선생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상담을 이어 갔습니다.

수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
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교무실에서, 다
른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다니요.

수호는 더 이상 새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은 마음
이 없어졌습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13~18세 성소수자 청소년 200명과 중·고
등학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 내 차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성소수자 청소년 중 92퍼센트가 다른
학생으로부터, 80퍼센트가 교사로부터 혐오의 말을 들어 봤다고 답했
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은 스트레스, 우울증, 친구와의 멀어
짐, 학습 의욕 저하를 비롯해 자살 시도나 자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성 정
체성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121쪽 제28조



운동선수 이전에 학생이라고요

토요일 오후, 수호는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하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수호가 묻자, 친구가 억울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드민턴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던 친구는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배드민턴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부의 경기 성적이 낮은 데다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배드민턴부가 사실상 해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럼 배드민턴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 가면 되지 않아?”

수호의 질문에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드민턴부를 운영 중인 다른 학교로부터 이미 전학 허가서를 받아냈는데, 정작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전학을 만류하고 있어서 새로운 학교로 못 가게 됐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배



드민턴부를 해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선수들도 다른 학교로 이탈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저마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의 사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학생 운동선수들에게는 경기 중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운동이나 훈련을 빙자한 고강도 체벌이 자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른바 관행을 이유로 벌어지는 체벌과 폭행 역시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121쪽 제28조



아르바이트, 똑똑하게 해야죠

“강수영! 막 걸렸어. 얼른 일어나. 첫 교시부터 대놓고 존다 이거지?”

수호가 돌아보니 수영이가 잠에서 덜 깬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봐주세요. 어젯밤 편의점 알바 하나가 펑크 내는 바람에 새벽 타임까지 일했대요.”

다른 친구가 용기내 수영이의 편을 들어 줬습니다. 수호의 반에는 수영이처럼 평일 오후나 밤중에 편의점,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대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죠. 그렇게 일하다 보니 항상 피곤해하고 수업 중에 졸기 일쑤입니다.

“너…….”

선생님은 가만히 수영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너 근로계약서는 쓴 거니? 계약서에 초과 근무에 대한 조항이

있어? 수당을 따로 받았고? 연장근무에 해당해서 통상임금보다 1.5배 받아야 해. 그리고 보니 너 연차 휴일은 받고 있지? 주 15시간 일하면 하루 쉴 수 있는 거 알지? 선생님도 아르바이트 안 해 본 게 없어. 내 전문 분야니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당장 물어봐라!”

반 친구들과 수영이는 와하하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호는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일하는 친구들이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임금을 적게 받거나 혹은 못 받거나,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않기를 말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도 일하는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 임금과 매주 1일 이상 휴일 보장, 산재 보상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 조건을 빠뜨리는 등 고용 불안과 해고 위험, 저임금과 임금 체불, 성희롱과 폭력 등의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한 근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을 중심으로 ‘미래노동인권지킴이단’을 2016년 9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모두의 노동 인권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121쪽 제28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793호, 2018. 1.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책무)

-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수호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협으로부터의 안전)

-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 은 학생과 교직원 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 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

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육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4.>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상당 및 조사 등 청구권)

-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수호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당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12.29.>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

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교육여형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중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신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9조제2항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수호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와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 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 9.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개정 2018.1.4.>
-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8.1.4.>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4.>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4.>
-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회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35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1.4.>
 - ⑤ 위원회의 간사는 제34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생참여단)

-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8.1.4.>
-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1.4.>
-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인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40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검칙의 제한 등)

-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8.1.4.>
- ③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둔다.
-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학생인권영향평가)

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 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개정 2016.12.29.>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4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 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47조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4.>
-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문화 방안
6. 교육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개정 2016.12.29.>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7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

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4.>

-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50조(비밀유지의무)

-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성원은 제48조 제1항의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247호, 201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부터 제41조 제1항까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 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교육청 산하의 학생인권전문부서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12. 18.]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64호, 2017. 12. 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인권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 조례 제34조제3항제1호의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③ 조례 제35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학생인권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3조(학생참여단)

① 조례 제37조에 따른 학생참여단은 대표 1명과 부대표 3명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구성하고, 집행부를 둘 수 있다.

② 학생참여단의 대표 및 부대표는 학생참여단 위원 중에서 선출되고,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학생참여단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참여단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학생참여단 10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7조제4항제8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참여단의 자체실태조사
 2. 학생인권 관련 홍보활동
 3. 그 밖에 학생참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⑤ 교육감은 학생참여단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조례 제42조에 따른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에 교육전문직원이나 일반직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학교폭력예방법」대처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1조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지원
2.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 지원

제6조(학생인권 상담)

① 학생인권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학생권과 관련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구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경우로 직접 방문, 전화, 전자우편, 우편, 팩스, 온라인,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학생인권상담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대장을 작성하여 조례 제47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옹호관은 그 결과를 검토한 후에 재상담 등 추가

적 조치를 학생인권상담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례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학생인권상담실이 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상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상담의 경우
2.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상담의 경우
3.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경우
4. 체벌, 아동학대 등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경우
5. 그 밖에 즉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구제신청)

① 학생인권침해사건의 구제신청(이하 “구제신청”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에 따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온라인과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한다.

② 옹호관은 구제신청한 내용이 피해자 및 가해자, 피해사실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10일 이상의 상당 기간이 지나도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제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옹호관은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전자우편·우편·팩스 또는 유·무선 전화 등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옹호관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및 처리)

① 옹호관은 구제신청 사건의 내용에 관계 기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다른 법령에 따라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학생인권보장의 범위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관계 기관 또는 해당 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옹호관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옹호관은 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른 협조가 어려울 때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관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옹호관은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권고)

① 조례 제49조제1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신청인 보호를 위한 피신청인등과의 임시 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학생의 생명, 신체의 안전,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49조제5항과 같이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조치결과는 60일 이내에 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9조제8항에 따른 공표는 홈페이지나 그 밖에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0조(결과의 통지)

옹호관은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통지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학생인권침해사건의 구제신청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조례 제6798호, 2018.1.4., 제정]

제1조(목적)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수호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산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

-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29조에 따라 수립된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

교육감은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노동인권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제공)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노동인권 보장 및 구제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노동인에 관한 구제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노동인권교육)

산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연수 등)

-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청,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산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798호, 201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발행일 2018년 12월

퍼낸이 서울특별시교육감

퍼낸곳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소 (우)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기획총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제작·디자인 (주)콘텐츠하다 070-8987-2949

일러스트 최보윤